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9서식] <신설 2019. 7. 16.>

비산누출시설 목록

① 순번	② 시설 구분	③ 주요 배출공정				④ 도면 번호	⑤ 시설 명	⑥ 태그 식별자 (TagID)	⑦ 위치 정보	⑧ 측정 가능 여부	⑨ 측정 불가 사유	⑩ 관리 대상 물질	⑪ 관리대상물질 함량(wt%)	⑫ 물질 수지
		대공정	중공정	소공정	단위 (unit)									
1														
2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

작 성 방 법

1. ①란은 대상시설의 목록 순번을 적습니다.
2. ②란은 대상시설의 비산누출시설 세부시설 종류(예시: 개방식라인, 펌프, 밸브, 플랜지 등)를 적습니다.
3. ③란은 대상시설이 속한 배출공정을 적습니다.
4. ④란은 대상시설이 표기된 도면번호(P&ID No.)를 적습니다.
5. ⑤란은 "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" 상의 대상시설명을 적습니다.
6. ⑥란은 대상시설에 부착되는 식별판에 기재되거나 별도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7. ⑦란은 대상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"TagID, 설치층수, 바닥면에서의 설치 높이, 이송배관 종·횡 구분, 배관 두께(단위 : 인치), 주요 배출공정 기준 설치방향, 대상시설의 비산누출시설 세부시설 종류" 순으로 적습니다.
8. ⑧란은 누출점검 가능시설과 비안전·난해 등 누출점검 불가시설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9. ⑨란은 누출점검 불가시설에 대한 세부사유(예시: 고소지역, 보온재 등)를 적습니다.
10. ⑩란은 대상시설에서 취급하는 관리대상물질을 적습니다.
11. ⑪란은 대상시설에서 취급하는 관리대상물질의 총 함량(wt%)을 적습니다.
12. ⑫란은 "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"상의 대상시설의 물질수지 번호를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